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재원

새누리당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배포일시

2013. 10. 18. (목)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보도 가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419 호
전화 02)784-2820, 팩스 02)788-0153 담당 : 오범석 비서관(010-9121-2152)

존경받는 기업 1위 안랩(AhnLab)

'농협 전산망 사고'에 대한 책임 인정하였지만 피해보상은 거부

안랩 납품 백신 전용 서버의 결함, 농협 전산망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
사고 직후 사과한 안랩, 이젠 피해 보상 협상은 물론 피해 언급조차 기피
농협과 안랩 간 계약 상 안랩은 발생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 있어
2011년 4.12 전산망 사고 때 농협에 115억원 보상한 IBM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

안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에 납품한 보안장비의 결함과 관리소홀로 인해 "NH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회사의 알려진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손해배상은커녕 그 책임에 대한 언급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20일 방송 및 금융 6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사이버 테러가 감행되어 농협을 포함한 6개사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농협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랩의 V3 백신이 설치된 농협 직원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고, 안랩이 납품한 APC 서버(자산 및 중앙관리 서버)의 결함과 안랩의 관리 소홀로 그 악성코드가 APC 서버에 전염되면서 전국 농협으로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농협은행 및 회원 농·축협의 단말기 42,223대 중 17,137대, 자동화기

기 32,004대 중 12,857대가 사용 중단되는 등 업무용 PC의 약 40%가 하드디스크 손상으로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시스템 복구 비용으로만 최소 50억원¹⁾이상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지난 2011년 11월 28일 (주)안철수연구소(현 안랩)와 약 18억 3천만원을 들여 ‘단말보안시스템구축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안랩이 농협에 납품한 APC서버(자산 및 중앙관리 서버) 관련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2년이고, 납품 완료 후 안랩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안랩의 책임과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농협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랩은 손해발생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3년 2월 27일 농협이 안랩과 체결한 약 2억 8천만원 규모의 ‘바이러스 백신 및 보안솔루션 통합유지보수계약’ 상 「유지보수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안랩은 보안관련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기간 중 안랩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안랩의 책임과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랩은 손해발생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랩은 사고 9일 후인 지난 3월 29일에 “농협에 납품한 APC서버의 계정(아이디 및 패스워드)이 안랩의 관리소홀로 탈취된 흔적이 있으며, 동 APC서버의 로그인 인증 관련 취약점으로 인해 악성코드가 내부망으로 배포될 수 있었다”, “안랩의 관리 소홀 및 제품 기능 상 이슈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신속한 보완대책을 강구 중이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고객사인 농협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며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개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안랩이 농협 전산망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협의 지속적인 협상 요청에 대해 계속 말 바꾸기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총 5,042백만원 (사무소별 자체 복구비용 2,297백만원, 사무소별 자체 복구비용 531백만원, 복구용 저장장치 공급(3,580개) 255백만원, 자동화기기 복구 유지보수업체 비용 1,400백만원, 3.20 관련 법률자문 용역 500백만원, 기타 비용 59백만원)

농협은 안랩과 총 5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5월 9일 1차 협상에서 안랩은 “최종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보상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6월 26일 2차 협상에서는 “안랩의 장비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안랩은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부인하였다. 7월 10일 제3차 협상에서 “안랩은 협상 중에 책임소재 문제를 언급할 경우 양사의 노력이 헛될 수 있다면서, 안랩이 왜 가해자인가? 왜 손해배상 관점으로 처리해야 하는가?”라며 오히려 농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8월 21일 4차 협상에서 농협은 안랩의 말바꾸기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산망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 “전산망 사고에 대한 보상협상이 아니라 향후 정보보호 컨설팅 등 비즈니스 관련으로 상호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하였다. 8월 28일 5차 협상에서 안랩은 “상호 신뢰 회복 협상 시 3.20 사고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숙연한 입장이 손해배상은 고사하고 전산망 사고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말라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2011년 4월 12일에 농협 전산망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IBM서버가 해킹되어 275대의 서버가 손상되었을 때, IBM이 농협이 입은 직·간접 손해 197억원에 대해 115억원을 보상한 사례가 있어, IBM과 정반대되는 안랩의 대응에 대한 농협 내부에서의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랩의 말 바꾸기보다 더 이상한 것은 전산망 사고의 피해자인 농협이 계약 상 권리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커녕 협상을 진행할수록 안랩의 눈치만 보며 안랩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은 지난 6월 전산망 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김앤장과 5억원의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고 발생 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건의 자문보고서도 받지 못하였고, 간접적인 피해액조차 추계하지 못하고 있다.

안랩은 ‘대한민국 대표 보안기업’이라는 브랜드로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보안사업에 주요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04부터 2012년까지 9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 윤리경영 대상, ‘투명회계상’ 등을 수상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안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안랩 윤리헌장에서도 “우리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충족을 통하여 고객가치

창조와 감동경영을 실현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책임을 통감하며 고객사에 사과한다는 입장은 간데없고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회피는 물론이고 책임을 언급하기만 해도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안랩의 태도는, 그동안 소비자와 국민이 그동안 알고 있던 안랩의 이미지나 안랩이 표방한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전산망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협중앙회가 계약 상 정당한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사안일한 태도가 농협중앙회에서 전산망 장애가 반복해서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이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하고 책임소재에 따른 피해를 철저히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농협중앙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끝.

<농협이 안랩과 체결한 계약현황 - 농협중앙회 자료>

계약번호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원)
제2013-034호	바이러스 백신 및 보안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2013-02-27	277,000,000
제2012-395호	신보험시스템 서버용 백신 구매	2012-12-14	895,000
제2012-137호	IT 보안 Compliance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컨설팅	2012-06-18	480,000,000
제2012-050호	바이러스 백신 및 보안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2012-03-02	290,000,000
제2011-272호	단말보안시스템 구축	2011-11-28	1,829,300,000
제2011-267호	AhnLab V3 Mobile Plus S/W 사용 계약	2011-11-22	4,582,600
제2011-266호	오픈뱅킹용 온라인 방화벽 S/W 사용 계약	2011-11-22	29,040,000
제2011-109호	IT 정보보호 컨설팅 계약	2011-07-05	803,000,000
제2010-251호	NH스마트뱅킹 보안S/W 도입(V3)	2010-12-23	22,000,000
제2010-087호	스마트 폰 뱅킹 서비스 S/W 도입(V3)	2010-06-07	27,500,000
제2009-008호	악성코드및 위변조 탐지시스템 유지보수	2009-02-05	90,530,000
제2008-250호	무선단말용 바이러스 백신 구매	2008-11-19	990,000
제2007-311호	홈페이지 위/변조 탐지 시스템 구입 계약	2007-12-07	44,000,000
제2007-282호	e-뱅킹 고객용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ASP 서비스 계약	2007-11-27	41,998,000
제2006-333호	고객용 PC 방화벽 추가도입	2006-12-01	20,000,000
제2005-255호	바이러스 중앙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05-10-31	118,348,000
제2005-169호	인터넷뱅킹 고객PC 보안시스템 재계약	2005-08-19	39,490,000
제2004-133호	바이러스 중앙관리시스템(VMS) 구축 계약	2004-07-01	229,900,000